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법문 중 ‘행위태양’을 ‘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’으로 변경함
(안 제126조의2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